

#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연월일 : 2004.11.2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중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2004.3.11법률 제 7188호로 공포]됨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다.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4조)
- 라.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안 제5조)
- 마.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안 제6조)
- 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안 제7조)
- 사.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아. 기금운용심의(안 제11조)
- 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건설방재과-12823(2004.9.18)호 조례표준안 시달로 같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04. 10. 12 ~ 11.1)기간 의견제출 없음

##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적립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적립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구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용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구 금고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방재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사하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